기타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　　정 : 2003. 11. 21
제1차 개정 : 2005. 03. 10
제2차 개정 : 2005. 07. 14
제3차 개정 : 2006. 02. 20
제4차 개정 : 2008. 05. 09
제5차 개정 : 2009. 05. 04
제6차 개정 : 2009. 05. 15
제7차 개정 : 2009. 09. 17
제8차 개정 : 2010. 08. 16
제9차 개정 : 2011. 01. 24
제10차 개정 : 2012. 01. 19
제11차 개정 : 2013. 01. 22
제12차 개정 : 2013. 05. 06
제13차 개정 : 2015. 01. 15
제14차 개정 : 2015. 09. 21
제15차 개정 : 2015. 12. 03
제16차 개정 : 2016. 04. 25
제17차 개정 : 2017. 03. 01
제18차 개정 : 2021. 05. 01
제19차 개정 : 2021. 07. 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기타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 제5조 제6항에 의거 산학협력사업,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출판사업, 이러닝교육사업,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이전사업, 교육훈련사업 등

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필요한 신기술의 개발·보급·확산을 통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600번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 내에 두고, 제2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별도의 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정의) 산학협력단 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학협력”이라 함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산업체 등”이라 함은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를 말한다.
3. “교직원 등”이라 함은 대학소속의 교원 및 직원과 산학협력단 소속의 직원으로서 산학협력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양도 및 활용이 가능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신지적재산 및 저작권을 말한다.

제5조(사업) 산학협력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학협력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된 회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대학에서 위탁한 학교기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산학협의회 및 산학협력연구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대학의 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8. 산학협력관련 국책사업유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9. 창업보육, 산학컨소시엄 등의 사업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10. 교수현장연구, 학생현장학습제 등 산업체와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11. 수탁연구비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12.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의 위탁 교육훈련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13.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 발행 및 판매에 관한 사항
14.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에 관한 사항
15. 온라인 정보제공 및 위탁훈련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16. 공적개발원조(ODA) 용역, 위탁 및 파견 사업에 관한 사항
17. 산학협력단 관할 각종 국책사업단 및 연구소의 경영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18. 산학협력가족회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9. 기타 산학협력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

제 2 장 기 관

제 1 절 조 직

제6조(이사) 산학협력단에는 1인의 상임이사를 둔다.

제7조(단장,부단장)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과 부단장을 두고 단장은 제6조의 상임이사가 겸임 한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대학의 총장이 임면한다.
③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있다.
② 하부조직은 정관 제5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유연화팀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총장은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학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의 교직원 신분을 유지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산학협력연구소) 산업체 등과 대학간의 인력·시설의 상호교류와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산학협력단 산하의 산학협력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의 2(첨단기술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산업체 재직 근로자 능력개발 교육훈련 수요에 부응하고, 재학생 전공실습교육 지원을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첨단기술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첨단기술교육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유연화팀을 둘 수 있다.
③ (삭제)

③ 첨단기술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학교기업) ① 산학협력단에서는 대학에서 위탁한 학교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기업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산학협의회)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기관, 유관기관, 산업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하여 산학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산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산학협력사업의 공동수행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에 관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 업무 담당자의 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의 촉진 및 사업성과의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 2 절 운영위원회

제12조(설치 및 구성) ① 산학협력단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 11인이내(위원장 1인 포함)
감사: 1인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4인 및 6인 이내의 선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대학의 기획처장, 교무처장, 행정처장 및 산학협력단 부단장으로 하며, 선임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한다.
④ 감사는 대학 감사실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⑤ 선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가 된다.

제1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단 운영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단 정관 및 운영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수탁연구비, 연구간접경비 및 학술연구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단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특별보상금 지급대상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자문한다.

제13조의 2(감사의 기능) 감사는 산학협력단 재정상황과 회계감사를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결과는 정기회의 개최 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지체없이 그 사실을 운영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1월과 5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3 장 재산 및 회계

제 1 절 재 산

제15조(재산의 구분)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대학의 출연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보조금 또는 증여재산
3.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된 적립금

제16조(재산의 관리)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4.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경우

제17조(지적재산권의 취득·관리)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계약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취득·사용 및 관리 할 수 있다.

제18조(자금의 관리)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한 모든 수입은 산학협력단 수입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계약 등에 의한 모든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흐름이 그 원칙과 용도에 따라 파악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 2 절 회 계

제19조(회계원칙 등)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자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 회계처리는 정부 고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산학협력단 기부금 수입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며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를 원칙으로 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20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속하는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 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자산으로 한다.

제21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 계약에 의한 수입금, 기부금, 또는 물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전문·특화창업 강좌, 기술전문 강좌 등의 교육 사업으로 인한 수입
6.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 및 실험·실습이나 장비 등의 사용료
7. 산학협력단 소유 고가기자재를 활용한 시험분석 수입
8. 이자수입 등 기타 운영수입금

제23조(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 · 운영비
2. 산학협정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경비
4. 산학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5. 산학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6. 각종 수익사업의 유치 및 사업목표 달성에 기여한 교직원에 대한 보상금

7.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해 산학협력단 재정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24조(재무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학의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국책사업유치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의 양도, 임대, 교환, 포기
3. 채권의 포기 및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사업계획,예산,결산 등) ① 산학협력단장은 사업계획서 및 자금예산서, 결산서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1. 사업계획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 확정한다.
2. 매회계년도 자금예산서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3. 매회계년도 결산서는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이를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결산이 확정될 때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 에 의한 감사 의견서가 첨부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단장은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 총장은 제12조 제4항에 의한 감사가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포함한 업무전반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토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27조(정관의 변경) 산학협력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대학의 규정 변경절차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비밀유지의무) 산학협력단 정관에 의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 또는 재직하였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해산) ① 산학협력단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의 청산업무는 단장이 수행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법률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0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산학협력단을 해산하였을 경우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대학 학교법인에 귀속된다.

제31조(준용) 산학협력단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운영세칙) 산학협력단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단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3조(공고사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학신문 또는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
2. 산학협력단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사항
3. 산학협력단의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4조(대학의 지원) 대학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3. 11.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산학협력단 설치 및 운영관리규칙”은 폐지하며, 동 규칙에 의해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 의무는 이 정관에 의한

산학협력단이 포괄 승계한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산학협력단장은 이 정관에 의한 산학협력단장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5. 03.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5. 7. 1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정관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 02.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 05. 0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 05. 0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 05.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 09.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 08.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 01.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 01.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 01.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 05. 0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 01.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 09.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 12. 0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 04.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 03.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 05.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 07. 01.부터 시행한다.